

---

## Policy and Law Report \_Vol.110

###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11.8~ 11.14) -

November 16,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 본회의 주요 처리법안(2021. 11. 11)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p><b>• 제12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b></p> <p>산업통상자원부는 제12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b>①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핵심전략산업 선정</b></p> <table border="1" data-bbox="325 757 1294 1305"> <thead> <tr> <th>경자청</th> <th>핵심전략산업 선정(안)</th> </tr> </thead> <tbody> <tr> <td>인천</td> <td>① 바이오·헬스케어 ② 스마트제조 ③ 항공·복합물류 ④ 지식·관광서비스 (총 56개 코드)</td> </tr> <tr> <td>부산진해</td> <td>① 복합물류·운송 ② 스마트수송기기 ③ 첨단소재·부품·장비 ④ 바이오·헬스케어 (총 56개 코드)</td> </tr> <tr> <td>광양만</td> <td>① 기능성화학 ② 그린에너지 ③ 금속소재·부품 ④ 물류·운송 (총 50개 코드)</td> </tr> <tr> <td>경기</td> <td>① 미래모빌리티 ② 의료·바이오 ③ 수소에너지 ④ 물류·컨벤션 (총 26개 코드)</td> </tr> <tr> <td>대구경북</td> <td>① ICT·로봇 ② 의료·바이오 ③ 미래모빌리티 (총 49개 코드)</td> </tr> <tr> <td>동해안</td> <td>① 휴양형관광·레저 ② 수소에너지 ③ 첨단소재·부품 (총 40개 코드)</td> </tr> <tr> <td>충북</td> <td>① 바이오헬스 ② 스마트IT부품 ③ 항공모빌리티 ④ 에너지소재·부품 (총 51개 코드)</td> </tr> <tr> <td>광주</td> <td>① 미래형자동차 ② 스마트에너지 ③ 시용복합 (총 53개 코드)</td> </tr> <tr> <td>울산</td> <td>① 미래모빌리티 ② 미래화학신소재 ③ 수소·저탄소에너지 (총 54개 코드)</td> </tr> </tbody> </table> <p><b>② 부산진해 경자구역 응동지구(II단계) 물류기반 개선을 통한 활성화</b></p> <p><b>③ 광양만권 경자구역 울촌제2산단을 투자수요 대응형 산단으로 적극 개발</b> - 투자수요에 맞는 용지개발을 위해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p> <table border="1" data-bbox="379 1496 1273 1597"> <thead> <tr> <th>구 분</th> <th>기 존</th> <th>변 경</th> </tr> </thead> <tbody> <tr> <td>사업기간</td> <td>2010 ~ 2021</td> <td>2010 ~ 2024</td> </tr> </tbody> </table> <p><b>④ 충북경자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2지구 기업 및 이용자중심의 재배치 등이 있음</b></p>	경자청	핵심전략산업 선정(안)	인천	① 바이오·헬스케어 ② 스마트제조 ③ 항공·복합물류 ④ 지식·관광서비스 (총 56개 코드)	부산진해	① 복합물류·운송 ② 스마트수송기기 ③ 첨단소재·부품·장비 ④ 바이오·헬스케어 (총 56개 코드)	광양만	① 기능성화학 ② 그린에너지 ③ 금속소재·부품 ④ 물류·운송 (총 50개 코드)	경기	① 미래모빌리티 ② 의료·바이오 ③ 수소에너지 ④ 물류·컨벤션 (총 26개 코드)	대구경북	① ICT·로봇 ② 의료·바이오 ③ 미래모빌리티 (총 49개 코드)	동해안	① 휴양형관광·레저 ② 수소에너지 ③ 첨단소재·부품 (총 40개 코드)	충북	① 바이오헬스 ② 스마트IT부품 ③ 항공모빌리티 ④ 에너지소재·부품 (총 51개 코드)	광주	① 미래형자동차 ② 스마트에너지 ③ 시용복합 (총 53개 코드)	울산	① 미래모빌리티 ② 미래화학신소재 ③ 수소·저탄소에너지 (총 54개 코드)	구 분	기 존	변 경	사업기간	2010 ~ 2021	2010 ~ 2024	2021-11-05
경자청	핵심전략산업 선정(안)																											
인천	① 바이오·헬스케어 ② 스마트제조 ③ 항공·복합물류 ④ 지식·관광서비스 (총 56개 코드)																											
부산진해	① 복합물류·운송 ② 스마트수송기기 ③ 첨단소재·부품·장비 ④ 바이오·헬스케어 (총 56개 코드)																											
광양만	① 기능성화학 ② 그린에너지 ③ 금속소재·부품 ④ 물류·운송 (총 50개 코드)																											
경기	① 미래모빌리티 ② 의료·바이오 ③ 수소에너지 ④ 물류·컨벤션 (총 26개 코드)																											
대구경북	① ICT·로봇 ② 의료·바이오 ③ 미래모빌리티 (총 49개 코드)																											
동해안	① 휴양형관광·레저 ② 수소에너지 ③ 첨단소재·부품 (총 40개 코드)																											
충북	① 바이오헬스 ② 스마트IT부품 ③ 항공모빌리티 ④ 에너지소재·부품 (총 51개 코드)																											
광주	① 미래형자동차 ② 스마트에너지 ③ 시용복합 (총 53개 코드)																											
울산	① 미래모빌리티 ② 미래화학신소재 ③ 수소·저탄소에너지 (총 54개 코드)																											
구 분	기 존	변 경																										
사업기간	2010 ~ 2021	2010 ~ 2024																										
국토 교통부	<p><b>•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개정</b></p> <p>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분양가 상한제 운영 및 민간 사전청약 시행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 및 민간 업계에 배포함</p>	2021-11-08																										

부처	내용	일시								
국토 교통부	<p><b>「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b></p> <p>① <b>(택지비)</b> 공공택지는 불합리한 심사 방식을 개선, 민간 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시 심사 기준을 구체화</p> <p style="text-align: center;">&lt;택지비 항목 개선방안&gt;</p> <table border="1" data-bbox="323 577 1283 1424"> <thead> <tr> <th data-bbox="323 577 528 629">구 분</th> <th data-bbox="528 577 1283 629">개선방안</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3 629 411 913" rowspan="2">공공 택지</td> <td data-bbox="411 629 1283 734"> <b>과다반영 방지</b>            · (문제점) 택지비 산정 시 공동주택 외 상가/임대 등 면적 포함사례 발생            · (개선방안) 상가/임대 면적을 제외하고, 공동주택 면적만 반영토록 안내         </td> </tr> <tr> <td data-bbox="411 734 1283 913"> <b>임의삭감 금지</b>            · (문제점) 사업 주체가 조기 착공을 위해 택지계약서 상 납부기한보다 저가에 대금을 납부하고 할인을 받은 경우, 택지비는 할인된 가격으로 인정하나, 선납에 따른 사업주 체 추가 이자조달 비용은 미 인정하는 사례 발생            · (개선방안) 계약서상 공급가격 및 납부 스케줄 기준으로 택지비와 기간이자 산정         </td> </tr> <tr> <td data-bbox="323 913 411 1424" rowspan="2">민간 택지*</td> <td data-bbox="411 913 1283 1182"> <b>개별입지 특성고려</b>            · (문제점) 서울 내 비교 아파트 표준지가 적어*, 감정평가 시 개별입지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민원 발생            * 아파트 표준지는 서울 자치구 당 평균 18개(일반 상업지역 내에서는 서울 전체 2개)            · (개선방안) 주변 환경 등이 가장 유사한 비교 사업지(표준지)가 선정 될 수 있도록 표준지 선정 기준 및 입지·특성차이 보정기준 구체화*            * 용도지역, 이용상황, 교통여건 등 주변환경, 지리적 근접성, 단지규모 등을 고려         </td> </tr> <tr> <td data-bbox="411 1182 1283 1424"> <b>실비용 적정 반영 검토</b>            · (문제점) 택지비 산정을 위해서는 조합 사업비 구성항목을 택지, 건물, 택지·건물 공통 귀속분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분류 기준이 불명확            * 수용재결/명도비용, 이주 촉진비를 택지 귀속분이 아닌 택지·건물 공통 귀속분으로 분류            · (개선방안) 조합사업비 중 택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택지비로 과부족 반영되지 않도록 택지, 건물, 공통 귀속분 분류 기준 명확화         </td> </tr> </tbody> </table>	구 분	개선방안	공공 택지	<b>과다반영 방지</b> · (문제점) 택지비 산정 시 공동주택 외 상가/임대 등 면적 포함사례 발생 · (개선방안) 상가/임대 면적을 제외하고, 공동주택 면적만 반영토록 안내	<b>임의삭감 금지</b> · (문제점) 사업 주체가 조기 착공을 위해 택지계약서 상 납부기한보다 저가에 대금을 납부하고 할인을 받은 경우, 택지비는 할인된 가격으로 인정하나, 선납에 따른 사업주 체 추가 이자조달 비용은 미 인정하는 사례 발생 · (개선방안) 계약서상 공급가격 및 납부 스케줄 기준으로 택지비와 기간이자 산정	민간 택지*	<b>개별입지 특성고려</b> · (문제점) 서울 내 비교 아파트 표준지가 적어*, 감정평가 시 개별입지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민원 발생 * 아파트 표준지는 서울 자치구 당 평균 18개(일반 상업지역 내에서는 서울 전체 2개) · (개선방안) 주변 환경 등이 가장 유사한 비교 사업지(표준지)가 선정 될 수 있도록 표준지 선정 기준 및 입지·특성차이 보정기준 구체화* * 용도지역, 이용상황, 교통여건 등 주변환경, 지리적 근접성, 단지규모 등을 고려	<b>실비용 적정 반영 검토</b> · (문제점) 택지비 산정을 위해서는 조합 사업비 구성항목을 택지, 건물, 택지·건물 공통 귀속분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분류 기준이 불명확 * 수용재결/명도비용, 이주 촉진비를 택지 귀속분이 아닌 택지·건물 공통 귀속분으로 분류 · (개선방안) 조합사업비 중 택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택지비로 과부족 반영되지 않도록 택지, 건물, 공통 귀속분 분류 기준 명확화	2021-11-08
	구 분	개선방안								
공공 택지	<b>과다반영 방지</b> · (문제점) 택지비 산정 시 공동주택 외 상가/임대 등 면적 포함사례 발생 · (개선방안) 상가/임대 면적을 제외하고, 공동주택 면적만 반영토록 안내									
	<b>임의삭감 금지</b> · (문제점) 사업 주체가 조기 착공을 위해 택지계약서 상 납부기한보다 저가에 대금을 납부하고 할인을 받은 경우, 택지비는 할인된 가격으로 인정하나, 선납에 따른 사업주 체 추가 이자조달 비용은 미 인정하는 사례 발생 · (개선방안) 계약서상 공급가격 및 납부 스케줄 기준으로 택지비와 기간이자 산정									
민간 택지*	<b>개별입지 특성고려</b> · (문제점) 서울 내 비교 아파트 표준지가 적어*, 감정평가 시 개별입지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민원 발생 * 아파트 표준지는 서울 자치구 당 평균 18개(일반 상업지역 내에서는 서울 전체 2개) · (개선방안) 주변 환경 등이 가장 유사한 비교 사업지(표준지)가 선정 될 수 있도록 표준지 선정 기준 및 입지·특성차이 보정기준 구체화* * 용도지역, 이용상황, 교통여건 등 주변환경, 지리적 근접성, 단지규모 등을 고려									
	<b>실비용 적정 반영 검토</b> · (문제점) 택지비 산정을 위해서는 조합 사업비 구성항목을 택지, 건물, 택지·건물 공통 귀속분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분류 기준이 불명확 * 수용재결/명도비용, 이주 촉진비를 택지 귀속분이 아닌 택지·건물 공통 귀속분으로 분류 · (개선방안) 조합사업비 중 택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택지비로 과부족 반영되지 않도록 택지, 건물, 공통 귀속분 분류 기준 명확화									
<p>* 한국부동산원 「택지비 적정성검토 매뉴얼」 개정(11월 초)</p> <p>② <b>(기본형 건축비)</b> 국토부 정기고시를 통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시 임의 삭감사례가 발생하였으며, 향후에는 지자체 별도 고시*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도 실시할 예정            * 현재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시군구에서 별도고시를 통해 ±5% 조정 가능</p> <p>③ <b>(가산비)</b>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상이한 가산비 항목은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 제시            - 기존 심사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항목을 인정·불인정·조정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            * 인정/불인정:법령상 재량없이 전액 인정하는 항목(증빙 시) / 법령상 전액 불인정 항목            조정:사업장별 여건을 고려 분심위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 및 조정비율 등을 결정</p>										

부처	내용	일시																										
국토 교통부	<p>- 특히, 조정 항목은 업체 제출금액(설계가액)에 대한 공종별 권장 조정률을 제시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되, 지역 및 사업지별 여건차이를 감안하여 심의를 통해 ±10%p 조정이 가능토록 함</p> <p style="text-align: center;">&lt; 공종별 권장 조정률 &gt;</p> <table border="1" data-bbox="323 474 1302 577"> <thead> <tr> <th>구분</th> <th>토목, 건축, 기계</th> <th>전기</th> <th>통신</th> <th>조경</th> <th>소방</th> </tr> </thead> <tbody> <tr> <td>권장조정률</td> <td>81.3%</td> <td>86.2%</td> <td>87.3%</td> <td>88.7%</td> <td>90%</td> </tr> </tbody> </table>	구분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소방	권장조정률	81.3%	86.2%	87.3%	88.7%	90%	2021-11-08														
	구분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소방																						
	권장조정률	81.3%	86.2%	87.3%	88.7%	90%																						
	<p>④ (기타) 중복계상·임의삭감 등 심사 오류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확히하고, 판단기준이 불확실한 항목은 기준 구체화</p> <p style="text-align: center;">&lt; 주요 사례 &gt;</p> <table border="1" data-bbox="323 725 1295 1644"> <thead> <tr> <th>구분</th> <th>사 례</th> <th>심사자료 분석결과</th> <th>개선방안</th> </tr> </thead> <tbody> <tr> <td>중복 적용</td> <td>건강 친화형</td> <td>·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되었으나, 별도 가산비로 중복 인정</td> <td>· 기본형건축비에 기 포함된 항목을 제시하여 가산비 중복반영 방지</td> </tr> <tr> <td>과다 단가 적용</td> <td>법정초과 복리시설</td> <td>· 법정 초과 복리시설 중 비주거 시설에 단가가 높은 주거용 기본형 건축비 적용</td> <td>· 초과복리시설 유형별 합리적 단가 제시 - 어린이집 등 : 지상층 기본형건축비 - 택배함, 독서실 등 : 지하층 기본형 건축비 - 놀이터 등 : 단가 제시(55만원/㎡)</td> </tr> <tr> <td rowspan="2">임의 삭감</td> <td>에너지 절약형 친환경</td> <td>· 에너지 절감률(25~60%) 별 단위면적 당 가산비 임의삭감</td> <td>·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별표8, 9에 따른 에너지 절감률 별 가산비* 임의삭감 불가안내 * 절감률 21~100% 별 1,188~128,936원/㎡</td> </tr> <tr> <td>구조형식</td> <td>· 특수구조(라멘구조, 철근) 건축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산비 인정 필요하나 임의삭감</td> <td>· ‘분상제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에 따른 구조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율(3~16%) 임의삭감 불가 안내</td> </tr> <tr> <td rowspan="2">기준 명확화</td> <td>피트</td> <td>· 지하구조 중 피트공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인정여부가 상이</td> <td>· 피트개념을 정의하고 지하층면적 인정 * 지하층면적에서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 EV홀 등 공용면적, 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 제외 면적</td> </tr> <tr> <td>기부채납</td> <td>· 도로, 공원 외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 지자체별 인정여부가 상이</td> <td>· 수분양자가 보편적으로 이용가능한 시설까지 분심위 심의를 거쳐 인정</td> </tr> </tbody> </table>	구분	사 례	심사자료 분석결과	개선방안	중복 적용	건강 친화형	·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되었으나, 별도 가산비로 중복 인정	· 기본형건축비에 기 포함된 항목을 제시하여 가산비 중복반영 방지	과다 단가 적용	법정초과 복리시설	· 법정 초과 복리시설 중 비주거 시설에 단가가 높은 주거용 기본형 건축비 적용	· 초과복리시설 유형별 합리적 단가 제시 - 어린이집 등 : 지상층 기본형건축비 - 택배함, 독서실 등 : 지하층 기본형 건축비 - 놀이터 등 : 단가 제시(55만원/㎡)		임의 삭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 에너지 절감률(25~60%) 별 단위면적 당 가산비 임의삭감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별표8, 9에 따른 에너지 절감률 별 가산비* 임의삭감 불가안내 * 절감률 21~100% 별 1,188~128,936원/㎡	구조형식	· 특수구조(라멘구조, 철근) 건축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산비 인정 필요하나 임의삭감	· ‘분상제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에 따른 구조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율(3~16%) 임의삭감 불가 안내	기준 명확화	피트	· 지하구조 중 피트공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인정여부가 상이	· 피트개념을 정의하고 지하층면적 인정 * 지하층면적에서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 EV홀 등 공용면적, 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 제외 면적	기부채납	· 도로, 공원 외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 지자체별 인정여부가 상이	· 수분양자가 보편적으로 이용가능한 시설까지 분심위 심의를 거쳐 인정
	구분	사 례	심사자료 분석결과	개선방안																								
	중복 적용	건강 친화형	·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되었으나, 별도 가산비로 중복 인정	· 기본형건축비에 기 포함된 항목을 제시하여 가산비 중복반영 방지																								
	과다 단가 적용	법정초과 복리시설	· 법정 초과 복리시설 중 비주거 시설에 단가가 높은 주거용 기본형 건축비 적용	· 초과복리시설 유형별 합리적 단가 제시 - 어린이집 등 : 지상층 기본형건축비 - 택배함, 독서실 등 : 지하층 기본형 건축비 - 놀이터 등 : 단가 제시(55만원/㎡)																								
	임의 삭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 에너지 절감률(25~60%) 별 단위면적 당 가산비 임의삭감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별표8, 9에 따른 에너지 절감률 별 가산비* 임의삭감 불가안내 * 절감률 21~100% 별 1,188~128,936원/㎡																								
		구조형식	· 특수구조(라멘구조, 철근) 건축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산비 인정 필요하나 임의삭감	· ‘분상제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에 따른 구조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율(3~16%) 임의삭감 불가 안내																								
	기준 명확화	피트	· 지하구조 중 피트공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인정여부가 상이	· 피트개념을 정의하고 지하층면적 인정 * 지하층면적에서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 EV홀 등 공용면적, 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 제외 면적																								
기부채납		· 도로, 공원 외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 지자체별 인정여부가 상이	· 수분양자가 보편적으로 이용가능한 시설까지 분심위 심의를 거쳐 인정																									
<p><b>「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정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b></p>																												
<p>① (추정분양가 산정 방식) 사업주체가 설계 진행 후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되,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 불가능한 항목은 매뉴얼에서 별도 추정방식 제시</p> <p>② (추정분양가 검증 절차) 사업주체는 추정분양가 자료가 작성되면,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 분양가 검증 신청 등이 있음</p>																												

부처	내용	일시
식품 의약품 안전처	<p>• <b>식품 해썹(HACCP) 의무적용 기한 내 인증 안내</b></p> <p>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올해 11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아야 한다고 밝힘</p> <p>*해썹(HACCP) 의무대상 품목('14.12~'21.12) :① 과자·캔디류, ② 빵류·떡류, ③ 초콜릿류, ④ 어육소시지, ⑤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⑥ 즉석섭취식품, ⑦ 국수·유당면류, ⑧ 특수용도식품</p> <p>이에 따라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가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됨</p> <p>* 4단계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 '20년 12월 1일 이전에 영업을 등록하고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13년 연매출을 기준으로 1억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인 식품제조·가공업체</p> <p>**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1차) 영업정지 7일 → (2차) 15일 → (3차) 1개월</p> <p>다만, 해썹(HACCP)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하여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용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유예*받을 수 있음</p> <p>*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제4조(적용품목 및 시기 등)</p>	2021-11-09

##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p>• <a href="#">「소득세법 시행규칙」 (2021.11.11. 시행)</a></p> <p>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현행 연별(年別)에서 월별(月別)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8370호, 2021. 8. 10. 공포, 11. 11. 시행)됨</p> <p>이에 따라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의 귀속월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서식을 조정하려는 것임</p>	2021-11-11
	<p>• <a href="#">「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11.11. 시행)</a></p> <p>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현행 연별에서 월별로 변경됨에 따라 증가된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8371호, 2021. 8. 10. 공포, 11. 11. 시행)됨</p> <p>이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한도를 200만원으로 정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세액공제 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p> <p>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상가건물을 새로 임차한 경우와 소상공인이 폐업했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의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p>	2021-11-11
	<p>• <a href="#">「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2021.11.12. 시행)</a></p> <p>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5원에서 300원으로 낮추려는 것임</p>	2021-11-12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기획재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개별소비세법 시행령</a>」(2021.11.12. 시행)</li> </ul> <p>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낮추려는 것임</p>	<p>2021-11-12</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a>」(2021.11.9. 시행)</li> </ul> <p>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 특정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맞춤형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사업을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에서 제외하여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p>	<p>2021-11-09</p>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p>• <b>「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p> <p>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외국물품을 관세영역,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일 자유무역 지역내 다른 입주기업체로 반출하려는 경우 반출신고를 하도록 정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37조 인용 조항을 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제1항 신설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37조의 인용 조항을 개정된 법률에 맞춰 조정 (안 제25조)</p> <p>②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는 같은 법 제70조(과태료) 제2항 12호 신설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별표 제1호 타목 및 제2호 나목) 물류창고업 등록 시 제출서류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함</p> <p>※ 의견제시기간 : 11/10(수)~11/25(목)까지 <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a>로 제출</p>	2021-11-10
환경부	<p>• <b>「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b></p> <p>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p> <p>그럼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8469호, 2021. 9.24. 공포, 2022. 3.25. 시행)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지원,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2021-11-1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국가전략 및 국가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추진상황 점검 방법 및 절차 (안 제2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전략 및 국가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도 및 시·군·구 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추진상황 검토보고서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li> </ul> <p>②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설정·관리 및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 현황 점검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퍼센트를 감축하는 것으로 함</li> <li>-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함</li> </ul> <p>③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산림청장, 기상청장을 추가하여 정함</li> <li>- 분야별 업무를 위해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둠 등이 있음</li> </ul> <p>※ 의견제시기간 : 11/11(목)~12/22(수)까지 <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환경부장관(탄소중립이행 T/F팀)</a>로 제출</p>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 <b>「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b></p> <p>최근 물류창고 내 인명·재산피해를 야기하는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다량의 가연성 화물이 적치된 물류창고의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 시설관리기준을 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으로 신설하여 물류창고의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대응하고, 물류창고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물류창고업 등록기준으로 화재안전 시설관리기준 신설 (제3조 개정 및 별표 신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창고 내 화재예방을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 시 「건축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화재안전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등록기준으로 추가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물류창고업 등록 시 제출서류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함</li> </ul> <p>※ 의견제시기간 : 11/10(수)~12/20(월)까지 <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국토교통부(첨단물류과)</a>로 제출</p>	2021-11-10
국토교통부	<p>• <b>「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p> <p>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관리체계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4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위한 인증관리센터 설치·운영 (안 제23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 지원, 안전조치 이행 점검 기술 지원, 인증 관련 기술 및 제도 연구, 인증 업무 지원 및 수수료 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인증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li> <li>- 인증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li> </ul> <p>② <b>인증기관의 지정 절차·방법 도입 (안 제24조, 제25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기관의 지정 관련 신청, 심사 및 지정 시 절차·방법을 정하고, 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 관련 적정한 기준을 정함</li> </ul>	2021-11-1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정된 인증기관을 고시하여 누구나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li> <li>③ <b>검증기관 지정 등 준용 규정 마련 (안 제26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증기관을 준용하되, 검증기관이 따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는 별도로 정하고, 이상행위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검증기준·절차와 검증방법 등 업무수행방법에 관해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li> </ul> </li> <li>④ <b>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규정 도입 (안 제27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과 검증업무준칙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경우 재·개정된 인증업무준칙 또는 검증업무준칙을 다른 관련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도록 함</li> </ul> </li> <li>⑤ <b>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 마련 (안 제28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인증업무와 검증업무 정지 시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그 처분을 고시·통지하도록 하여 가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함</li> </ul> </li> <li>⑥ <b>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 및 대응계획 등 준비 (안 제30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및 검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계획 및 조치를 정함</li> </ul> </li> <li>⑦ <b>인증서의 폐지 절차·방법 규정 (안 제31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기관은 인증서가 폐지될 경우 인증서 폐지목록 등 인증서 상태정보를 가입자나 인증관리센터,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서의 폐지로 인한 사고 위험 방지 및 인증업무 관리를 엄격히 할 수 있도록 함</li> </ul> </li> <li>⑧ <b>과징금의 부과·징수 근거 마련 (안 제32조, 제33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가입자의 이익이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여 인증기관이 동종의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 기준과 부과 및 납부의 절차를 정함</li> </ul> </li> <li>⑨ <b>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 (안 제34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으로 인해 가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위해 준비해야 할 보험금 또는 공제금, 적립할 준비금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그 용도와 배상자력 유지를 위한 방법을 정함</li> </ul> </li> <li>⑩ <b>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 (안 제37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함</li> </ul> </li> </ul>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 인증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p> <p>※ 의견제시기간 : 11/11(목)~12/21(화)까지 <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a>로 제출</p>	
<p>공정거래 위원회</p>	<p>• <b>「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b></p> <p>투자 목적이 명백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투자 활동과 외국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으로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간이심사 대상 확대 (안 III. 4. 및 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포함 (안 III. 4. (4) 신설)</li> <li>-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 유형 확대 (안 III. 6. 개정)</li> </ul> <p>* (기존) 회사설립에의 참여만 해당 → (개정) 주식취득, 합병, 임원겸임, 영업양수도 등 다른 결합 유형도 포함</p> <p>※ 의견제시기간 : 11/9(화)~11/30(화)까지 <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과)</a>로 제출</p>	<p>2021-11-09</p>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p>• <b>「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의원 등 13인)」</b></p> <p>최근 가상자산이 등장한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자산의 거래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p> <p>해외 주요국들은 법과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 산업과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없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음</p> <p>이에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정의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를 등록하고, 해당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처벌조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육성시키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법규 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가상자산의 정의 (안 제2조)</b></p> <p>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가상자산산업,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정의함</p> <p>② <b>가상자산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b></p> <p>가상자산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가상자산평가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의 기술과 품질에 등을 평가하도록 함</p> <p>③ <b>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 설치 (안 제16조 및 제17조)</b></p> <p>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가상자산 관련 전문인력 육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p> <p>④ <b>사업인가 등 (안 제19조 및 제20조)</b></p> <p>가상자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미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며,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함</p> <p>⑤ <b>사업자 의무 등 (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b></p> <p>가상자산의 발행시,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발행등록 및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충분한 설명의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해상충관리체계를 갖추고, 명의대여 금지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함</p>	2021-11-0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p>⑥ <b>금지행위 등 규정 (안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b> 가상자산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행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p> <p>⑦ <b>가상자산사업자협회 설립 (안 제39조 및 제40조)</b>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가상자산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협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p> <p>⑧ <b>사업자 감독 권한 등 (안 제41조 및 제42조)</b>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검사·처분권한 등을 규정함</p> <p>⑨ <b>과징금 부과 (안 제43조)</b>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p>	
	<p>• <b>「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b></p> <p>최근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플랫폼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영세한 가맹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p> <p>그런데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달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나 영세한 가맹점에게 적용하여야 할 우대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p> <p>이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등이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며,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의2 신설)</p>	2021-11-09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 <b>「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3인)」</b></p> <p>현행법은 모든 주식 거래를 손익과 관계없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주권상장 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이 있음</p> <p>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는 주식,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신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임</p> <p>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과세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p>	2021-11-08
기획재정위원회	<p>• <b>「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등 13인)」</b></p> <p>최근 반도체 공급부족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은 반도체 생산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주요한 산업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p> <p>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p> <p>이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0조)</p>	2021-11-09
	<p>• <b>「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등 12인)」</b></p> <p>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거대자본으로 인한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두어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일몰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임</p> <p>그런데 벤처기업 스톡옵션과 더불어 최근 국가전략기술로서 중요해지고 있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인력 유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현재 벤처기업에만 부여되고 있는 스톡옵션 과세특례를 국가전략기술 관련 중소기업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이들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p>	2021-11-09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 <b>「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b></p> <p>현행 법인세법 제46조의2는 적격분할이 아닌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매수차익(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음</p> <p>그런데 비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 발생 시 해당 양도차익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순자산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전액 귀속됨에도 법인세를 즉시 부담하게 됨. 특히 분할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최근 주식시장의 유동성 증가로 인하여 거액의 법인세를 즉시 납부해야 하는 등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p> <p>이에 비적격분할이라 할지라도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법인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여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5제2항 신설)</p>	2021-11-11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p>• <b>「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1인)」</b></p> <p>최근 기업 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 등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기업 및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이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사사고의 재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그 원인을 제거하고 복구하는 등 후속 대응조치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실효성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p> <p>이에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 및 유사한 침해사고의 지속적 발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대응조치 규정을 확대하고자 함</p> <p>한편, 대량의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어 국민의 정보 유출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스미싱 관련 전화번호에 대한 차단 근거가 미비하여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p> <p>이에 스미싱앱을 통한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중지를 요청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p>	2021-11-0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근거를 마련함 (안 제47조의6 신설)</li> <li>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현행법 제48조의3에 따른 침해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의 장은 관련 정보를 지체없이 공유하도록 함 (안 제48조의3)</li> <li>③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자료 보존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안 제48조의4)</li> <li>④ 스미싱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히 전화번호 차단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안 제49조의2)</li> </ul>	
<p>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0인)」</b></li> </ul> <p>「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등을 신고 요건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되어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지 못함</p> <p>한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경우 3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지며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는데,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인증갱신 또는 사후관리 시점(최대1년)까지 인증의 유지가 가능하여, 이를 활용한 홍보 등이 가능해 이용자들이 안전한 사업자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p> <p>이에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존 유지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대한 사후 처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47조제 10항제3호, 제47조제10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p>	<p>2021-11-08</p>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p>	<p>• <b>「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b></p> <p>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음</p> <p>그러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같은 요건은 불확정개념으로서 다툼의 소지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있음. 또한, 현행법상 임시조치의 경우에는 기간이 최대 30일에 불과하여 임시조치가 해제된 경우에는 여전히 해당 정보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문제도 있음</p> <p>이에 진실이 아닌 내용을 담은 언론기사 등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요청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현행법의 피해구제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등)</p>	<p>2021-11-11</p>
<p>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p>	<p>• <b>「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6인)」</b></p> <p>수소에너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에너지원인 수소를 활용하면서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여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p> <p>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 구조인 수소경제는 기존의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생산 효율을 늘리면서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 절감, 친환경 에너지 비중 확대, 수소차 및 연료전지와 같은 미래 유망품목 관련 산업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를 이끌고 있음. 앞서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소경제의 리더로 부각되고 있음</p> <p>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소경제의 모델로 자리잡고, 에너지 거래 거점이 관련 산업을 이끌어 왔던 역사를 통해 국제수소거래소의 필요성이 제기됨</p> <p>이에 제정안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소경제의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 국제수소거래소 설치에 대한 기준 등을 명시하여 수소에너지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전 지구적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이루려고 함</p>	<p>2021-11-08</p>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국제수소거래소의 설립 목적 (제1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수소거래소를 설립하여 국제간 수소거래를 활성화하고 수소의 가격안정 및 유통 개선사업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수소의 수급(需給)을 안정시켜 수소경제 발전, 온실가스의 감축 및 수소의 국내·국제간 거래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li> </ul> <p>② <b>자본금 출자 (제4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전액을 정부가 출자</li> </ul> <p>③ <b>사업 범위 규정 (제10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소에 상장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상품의 현물 또는 선물이 거래되는 수소 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li> <li>- 국제 수소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 제공, 홍보와 수소상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li> <li>- 국제 수소유통산업에 관한 기술지도와 국가간 수소상품 거래기술의 도입 및 알선</li> <li>- 수소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컨설팅</li> <li>- 수소의 현물 및 선물의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에 관한 사업</li> <li>-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li> </ul> <p>④ <b>국제수소시장의 개설 운영 (제11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소는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시장과 수소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li> <li>- 거래소는 제15조에 따른 수소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수소시장에서 내국인 간의 수소거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li> </ul> <p>⑤ <b>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제16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소는 회원의 수소시장 또는 수소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違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 책임</li> <li>- 거래소가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에서 충당</li> <li>-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그 배상한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구상권 보유</li> </ul>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 <b>「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9인)」</b></p> <p>현행법령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건설업의 사업주에게는 공사종류, 공정률 등 공사현황을 추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p> <p>그런데 산업재해 발생 시 건설업의 사업주가 보고하는 공사현황이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공사의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현황이어서 실제 공사현장의 어느 단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산업재해 발생 시 건설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관계수급인의 공사현황도 보고하도록 하여 향후 산업재해 발생을 적절히 예방 조치하려는 것임 (안 제57조 및 제175조)</p>	2021-11-10
환경노동위원회	<p>• <b>「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의원 등 10인)」</b></p> <p>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플랫폼 종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플랫폼 종사자는 기존의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 계약관계의 불공정성, 불안정한 고용 및 소득 등의 문제점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p> <p>이렇듯 플랫폼 산업의 발달로 새로운 일자리가 확산함에 따라 공정한 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p> <p>이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하여 보호하고,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관계법률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플랫폼 운영 사업자나 이용 사업자가 증명하도록 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p> <p>또한, 플랫폼 운영 사업자나 이용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이용계약 기간 및 갱신·변경·해지 절차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플랫폼 종사자가 요청하면 노무의 배정 및 보수,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 방법과 기준 및 결과 활용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플랫폼 산업에 공정한 계약관계가 확립되도록 하고자 함</p> <p>한편,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도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차별적 처우, 이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조</p>	2021-11-1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개인정보 및 사생활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플랫폼 종사자가 사회보험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다양한 플랫폼 종사자를 폭넓게 보호하고자 함</p> <p>끝으로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표준계약서의 개발과 보급,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사회보험료 및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에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8조, 제10조 및 제20조 등)</p>	

## ※ 본회의 주요 처리법안(2021. 11. 11)

소관위	처리법안 및 주요내용
<p>기획재정 위원회</p>	<p>• 「<b>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b>」(대안)</p> <p>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세무사법 등록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8.4.26.) 및 보완 입법의 미비로 2020년 1월 1일부터 세무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등록 규정이 실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방편으로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등록 없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li> </ul> <p>(주요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실효된 세무사 등록 규정을 회복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 실무교육 이수 후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li> <li>②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소개·알선 행위와 세무사 명의대여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공직퇴임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1년간 국가기관의 사무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함</li> </ol> <p>(기대 효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입법공백 상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직역 간 업무영역을 확립함으로써 부실한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전문자격사로서의 세무사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li> <li>② 전관예우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 권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을 것임</li> </ol>
<p>행정안전 위원회</p>	<p>• 「<b>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b>」(대안)</p> <p>현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제도가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p> <p>(주요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현행법상 ‘소방특별조사’를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명칭변경</li> <li>②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 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li> <li>③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li> </ol>

소관위	처리법안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 위원회	<p>④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하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도 두도록 함</p> <p><b>(기대 효과)</b></p> <p>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화재예방에 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p>
	<p>• 「<b>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b>」(대안)</p> <p>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현행 법률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할 필요가 있음</p> <p><b>(주요 내용)</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li> <li>②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동의 제도 개선</li> <li>③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성능위주설계 제도 개선</li> <li>④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여 차량화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li> <li>⑤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은 관계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등이 하도록 하고,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의 점검제도 개선</li> </ol> <p><b>(기대 효과)</b></p> <p>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체계적 규정 및 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소방시설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p>

소관위	처리법안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 위원회	<p>• <b>「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p> <p>최근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화물자동차 관련 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주변지역에서의 교통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커지고 있음</p> <p><b>(주요 내용)</b></p> <p>공영차고지설치자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공영차고지의 설치·변경이 학생통학과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관할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함</p>
	<p>• <b>「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p> <p>현행법에 따르면 항공종사자 등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대한 처분보다 음주한 경우에 대한 처분이 중하게 규정되어, 항공종사자 등이 자신의 혈중 알콜농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할 경우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실제 혈중 알콜농도에 대응하는 처분보다 가벼운 처분을 유도할 여지가 있음</p> <p><b>(주요 내용)</b></p> <p>항공종사자 등이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해당 자격증명등을 당연취소하도록 함</p>
여성가족 위원회	<p>• <b>「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용기의원, 허은아의원, 권인숙의원, 류호정의원 대표발의)</b></p> <p>강제적 섯다운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 10년간 섯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했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터넷 만화(웹툰), 누리소통망(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p> <p><b>(주요 내용)</b></p> <p>① ‘강제적 섯다운제’의 법적근거 삭제 -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p> <p>②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확대 -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가족에게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p> <p><b>(기대 효과)</b></p> <p>청소년 및 친권자등의 자율적 섯택으로 게임 중독·과몰입 방지 유도하여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p>



###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원회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11/19(금)	「해의의회 포커스」 제64호 발간	
국회도서관	11/16(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8호 발간 - 온라인 수색 관련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 및 독일 입법례	
	11/16(화)	현안입법 알리기 - 주제: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도입	
	11/17(수)	「메타버스 북 페스티벌」 개최 - 주제:로블록스 플랫폼을 활용한 최초의 메타버스 북 페스티벌	온라인
	11/18(목)	「최신정책정보:국외」 - 주요 외국 싱크탱크기관이 발간한 최신 정책보고서의 요약문과 외국의 주요 정책자료 중 최근 2년 이내의 번역리스트 수록	
예산정책처	주중	「단기 GDP 예측모형 연구」 발간 - 실질 GDP 예측을 위해 월간 자료를 이용한 단기 GDP 예측모형을 개발	
입법조사처	11/15(월) 14: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바람직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 유경원 교수(상명대)	온라인
	11/15(월)	「NARS 입법·정책」 제89호 발간 -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11/16(화) 14: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디지털세 논의 동향 및 대응과제 - 이경근 박사(법무법인 율촌)	온라인
	11/18(목) 10: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새로운 행정제도의 모색 - 서원석 교수(세종대), 최현선 교수(명지대), 이영범 교수(건국대)	온라인
	11/18(금) 16: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022년 이후의 조세정책 과제 - 김재진 원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온라인
미래연구원	11/18(금)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31호 발간 -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정부 간 사업분담 체계 개편	

## [별첨1] 제391회 국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특별위	11/15(월) 17:00	전체회의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예결위	11/16(화) 10:00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운영위	11/15(월) 15:00	예결산소위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11/16(화) 14: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의결 등
법사위	11/16(화) 10:00	예결산소위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11/17(수) 10: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의결 등
정무위	11/15(월) 10:00	예결산소위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11/16(화) 10: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의결, 공청회(가상자산법) 등
	11/17(수) 14:00	법안1소위	법안 심사
	11/18(목) 14:00	법안2소위	법안 심사
기재위	11/15(월) 10:30	조세소위	법안 심사
	11/16(화) 10:00	경제재정소위	법안 심사
	11/17(수) 10:00	조세소위	법안 심사
	11/18(목) 10:00	경제재정소위	법안 심사
	11/19(금) 10:00	조세소위	법안 심사
교육위	11/15(월) 09:30	예결산소위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11/15(월) 소위 산회후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의결 등
외통위	11/15(월) 10:00	예결산소위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외통위	11/16(화) 10:00	법안소위	법안 심사
	11/19(금) 10: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의결 등
	11/19(금) 11:00	전체회의	외교통일위원장 주관 다부처 외교 현안 간담회
국방위	11/16(화) 10: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의결 등
행안위	11/15(월) 14: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의결 등
	11/18(목) 10:00	법안1소위	법안 심사
환노위	11/15(월) 10: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등 상정
	11/16(화) 14:00	예결산소위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11/18(목) 10:00	예결산소위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11/18(목) 소위 산회후	전체회의	법안 심사

####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1/15(월) 10:00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정청래·임오경·장경태·강훈식·고민정 의원실 외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16(화) 07:30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연속세미나 - 바이든의 신외교와 한미관계 : 워싱턴의 시각	김한정·김경협 의원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의원회관 9간담회실
11/16(화) 09:30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이용빈 의원실	프레스센터 매화홀
11/16(화) 10:00	글로벌 앱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조승래 의원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외	국회도서관 대강당
11/17(수) 14:00	기후변화 공시 강화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장혜영 의원실, 경제개혁연구소	의원회관 8간담회실
11/16(화) 07:30	에너지 전환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토론회 수소경제, 대한민국 혁신성장에 혁신을 더하다	양정숙 의원실, 국회수소경제포럼	의원회관 7간담회실
11/18(목) 14:00	택시총량제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소병훈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11/19(금) 09:30	국회기후변화포럼 토론회 - 2030 NDC 상향! 평가와 후속과제는?	유의동·한정애 의원실, 국회기후변화포럼 외	의원회관 1세미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09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회>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11/9(화)	<b>「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7호 발간</b> - NFT의 가상자산 적용 논의에 관한 해외 입법동향	
	11/9(화)	<b>「현안, 외국에선?」 제23호 발간</b> -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선택	
입법조사처	11/8(월)	<b>「NARS 현안분석」</b> -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소방안전 강화방안	
	11/8(월)	<b>「NARS 입법·정책」</b>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과제	
	주중	<b>「이슈와 논점」</b> - RCEP의 농업 부문 영향평가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1/11(목) 13:30	<b>미래융합 인재상 논의포럼</b> <b>-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b>	이원욱, 조해진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서예지** | 소속변호사 T. 02-316-1787 E. yjiseo@shinkim.com
- **문응필** |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 **최유리** |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소속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희훈** | 소속변호사 T. 02-316-7917 E. hhpark@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